

중국의 여행자 통관정보(규정)
- 항저우해관 세부규정 포함 -

2014. 11월 현재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정 12도 이상 1.5리터이하 면세 ※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(0.75리터이하) 면세 ※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면세 없음 	
담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께련(cigarette) 400개피, 엽께련(cigar) 100개피, 씹는 담배 500g 면세 ※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래 여행자 께련(cigarette) 200개피, 엽께련(cigar) 50개피, 씹는 담배 250g ※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께련(cigarette) 40개피, 엽께련(cigar) 5개피, 씹는 담배 40g 	
향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 기준 없음 	
면세한도금액 (일반면세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,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○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,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○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, 비디오카메라, 카세트, 휴대용컴퓨터 각 1대 ○ 기타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	과세통관시 세율 : 품목 별 10~50%
외국환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SD 5,000이상 또는 인민폐 20,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○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,000위안 또는 USD 5,000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함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	<p>※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,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“외화휴대증명서”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- 중국 외환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%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(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~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) 	
의약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민폐 300위안 미만(홍콩 및 마카오지역 여행자 150위안)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음 ○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	
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세통관 :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행본 서적, 신문, 잡지류 등 출판물 : 1인당 10권 이하 - CD, DVD 등 음향제품 : 1인당 20개 이하 -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, 음향제품 : 1인당 3세트 이하 ○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서 합리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 ○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과세통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행본 서적, 신문, 잡지류 등 출판물 : 1인당 50권 초과 - CD, DVD 등 음향제품 : 1인당 100개 초과 -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, 음향제품 : 1인당 10세트 초과 	
반입불허 및 제한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무기, 탄약 및 폭발물 ○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○ 중국의 정치, 경제, 문화,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, 필름, 사진, 녹음 및 녹화 테이프, CD, 컴퓨터 자료 ○ 각종 독극물 ○ 각종 아편, 코카인, 헤로인, 대마 등 마약류 ○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○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, 약품 및 기타 물품 ○ 반입제한품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선전파발신기, 통신비밀기 * 특히, 위성방송수신장비는 개인휴대반입 불허 -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, 식물 등 - 담배, 주류 및 국가화폐 -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<p>기타 유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<중국세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>를 작성(외교관 등 면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) 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통로(적색통로)를 이용하여야 함 ○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,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○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-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,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, 세금이 인민폐 50,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(공안기관)에 의해 형사처벌 ○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,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	